#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17 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권칠승·박홍배·김 윤

서미화 · 김준형 · 송옥주

정준호 · 임호선 · 민병덕

전진숙 · 문금주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,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,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, 인천, 부산, 대구, 대전,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. 또한,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.

이에,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 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,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#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본문 중 "보훈병원(이하 "보훈병원"이라 한다)을"을 "보훈병원(이하 "보훈병원"이라 한다)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보훈병원"을 "보훈병원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설립·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이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설립·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(이하 "보훈병원등"이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 지급한다"를 "해당 보훈병원등에 지급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33조의2 전단 중 "보훈병원"을 각각 "보훈병원등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3조(진료) ① -----제33조(진료) ① 특수임무부상자 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 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(부상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[「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 -----보훈병원 원(이하 "보훈병원"이라 한다) (이하 "보훈병원"이라 한다)과 을 포함한다] 또는 지방자치단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.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다만,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 설립 ·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 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기관을-----아니하다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생 략)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-----<u>보</u>훈병원과 진료한다. 이 경우 그 진료 비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설립 •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 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免)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 지급한다.

#### 1. ~ 3. (생략)

### ⑥·⑦ (생 략)

제33조의2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 국가는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기관(이하 "보훈병원등"이라 한					
<u>다)</u>					
해당 보훈병원등에 지급할					
<u>수 있다</u> .					
1. ~ 3. (현행과 같음)					
⑥·⑦ (현행과 같음)					
제33조의2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					
<u>보</u>					
<u> 훈병원등</u>					
고조버이드					
<u>보훈병원등</u>					
,					